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-21호

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1. 28.

미래창조과학부장관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우정사업 운영위원회에 우편요금조정분과위원회의 신설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“우편요금조정분과위원회”를 추가하면서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(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)

나. (타법개정)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의 위임규정을 현행법 체계에 맞게 자구 수정

3. 의견제출

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) ‘정보마당 - 법령정보 - 입법예고란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 주소 : (339-01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(전화 044-200-8126, 팩스 044-200-8091, 이메일 karib32@koreapost.go.kr)